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1515 |
|------|------|

2024. 03. 0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1월 08일, 김동욱 의원(찬성자 9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2월 0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3.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출신 학생 및 대학 모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장학금의 종류를 시장장학, 서울장학 I, 서울장학II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서울장학I를 신설하여 대학교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서울장학II는 기존 복지장학금과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하되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의 기준을 서울장학1과 동일하게 규정함.(안제3조제2항, 제3항)
- 다. 장학생의 선발방법 및 지급인원을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서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라. 장학금 수혜내용은 서울장학I은 학업장려금으로 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하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는 기존 과 동일하게 등록금(수업료)으로 규정함. (안제5조제1항, 제2항)

Ⅲ. 검토의견 요약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서울지역 출신 학생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학금의 지급인원을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지역 출신 학생 장학금 현황

-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¹⁾ 제3조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립대는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교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조례에 따른 장학금은 시장장학과 복지장학으로 구분됨.
- 한편 시립대는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라 성적우수장학,

1)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경제지원장학, 능력개발장학, 국제교류장학, 특정장학, 연구근로봉사장학 등 6개 영역으로 장학이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시장장학은 성적우수장학에, 복지장학은 경제지원장학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 학부 교내 장학금 종류 >

| 구분 | 종류 |
|----------|---|
| 성적우수장학 | 시장장학, 학업우수장학 I·II종, 총장장학, 입학우수장학, 입학전형특별장학 I·II종 |
| 경제지원장학 | 복지장학, 지학장학, 사랑장학, 형실장학 I·II종, 주거장학 |
| 능력개발장학 | 학생리더장학, 공로(고시)장학, 공로(자격)장학, 공로(예비)장학, 재능우수장학, 자기계발장학, 글로벌리더장학, 시대인재장학 |
| 국제교류장학 | 외국인장학, 교환학생장학, 해외유학장학 |
| 특정장학 | 국가유공장학, 새터민장학, 장애인장학, 서울시립대학교가족장학, 학장장학 |
| 연구근로봉사장학 | 지역사회봉사장학, 교수지원장학 |

- 이와 같이 시립대의 다양한 장학제도 중 시장장학과 복지장학은 서울시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조례에 근거를 규정해 왔으며,²⁾ 이 중 복지장학은 재학생 가운데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립대에서 유일하게 서울지역 출신 학생을 우대하고 있는 장학제도라 할 수 있음.

2) 시립대 장학금의 재원은 서울시 지원금과 자체수입금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장학금 현황 >

(2024.02.08.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전체 교내장학 (학부) | | 조례 규정 장학 | | | | | |
|------|-----------------|-------|----------|-----|---------------|---------------|-------|-----|
| | | | 합계 | | 복지장학금 | | 시장장학금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23 | 5,150 | 4,390 | 364 | 439 | 136 (2.6%) | 163 (3.7%) | 228 | 276 |
| 2022 | 6,969 | 5,850 | 328 | 394 | 102 (1.5%) | 120 (2.1%) | 226 | 274 |
| 2021 | 6,814 | 5,593 | 325 | 389 | 93 (1.4%) | 109 (1.9%) | 232 | 280 |

다. 장학금 신설 및 명칭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시립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³⁾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우대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과거 시립대는 ‘시민장학금’ 제도를 통해 부모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감면해 주었으나 지난 2018년 신입생 입학금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시민장학금 제도도 폐지됨.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지역 출신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입생 중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장학 I 을 신설하며, 이에 맞추어 기존의 복지장학은 서울장학II 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구분 | 서울장학 I (신설) | 서울장학II(명칭 변경) |
|----------|--|---|
| 대상자 | 신입생 | 재학생 |
| 장학금 수혜내용 | 학업장려금 | 등록금(수업료) |
| 선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 경제적 사정 곤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 경제적 사정 곤란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 :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수 30/100이내 |

-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서울장학 I 의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⁴⁾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

|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4)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던 소득분위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2023년 복지장학(개정안 서울장학II)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임.

- 또한 서울장학 I 은 일반적인 등록금성 장학제도가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금지 원칙에 따라 모든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등록금(수업료) 감면이 아닌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학업장려금을 지급함.
- 이와 같은 장학제도의 신설은 특히 서울지역 출신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새로운 장학제도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며 현재 시립대는 서울시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재정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 참고로 장학금 재원 중 서울시 지원금의 비중은 2020년 17.0%에서 2024년 100%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임.

<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대학 회계 | 서울시 지원금 | 8,789,810 | (본) 6,866,810 (추) 2,055,000 (계) 8,921,810 | (본) 1,100,000 (추) 3,586,110 (계) 4,686,110 | (본) 1,300,000 (추) 2,050,697 (계) 3,350,697 | (본) 1,300,000 (추) 71,050 (계) 1,371,050 |
| | | 100% | 100% | 55% | 39% | 17.0% |
| | 자체 수입금 | 0 | 0 | (본) 3,751,223 (추) 75,890 (계) 3,827,113 | 5,175,699 | 6,678,453 |
| | 0% | 0% | 45% | 61% | 83% | |
| 계 | 8,789,810 | 8,921,810 | 8,513,223 | 8,526,396 | 8,049,503 | |

- 따라서 새로운 장학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립대와 서울시의 재정협약이 필수적이며, 현재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이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장학 I 비용추계액 >

| 장학명 | 예상 대상인원 | 학업장려금 | 예상 소요액 |
|--------|---------|-------|---------|
| 서울장학 I | 약 340명 | 30만원 | 1억 2백만원 |

- ※ 최근 3년간 서울출신 입학생 현황 : 평균 479명(입학생 수의 약 26.1%)
- ※ 예상 대상인원 : 서울지역 신입생의 약 70% 수준으로 추계
- ※ 학업장려금: 재학생 대상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제지원 장학인 형설장학 I 을 기준으로 산정

- 또한 시장장학과 복지장학이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두 장학금만 조례로 규정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장학제도가 서울시의 전입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립대의 모든 장학제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장학금 지급인원 선정 규정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이 정하도록 한 장학생의 지급인원을 장학생선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임.

- 현재 서울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립대의 장학 제도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현행 조례상 서울시장이 장학금 지급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학인원을 포함한 장학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

제7조(서울시립대학교 장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본교”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각 대학의 장, 각 대학원의 장, 각 처의 장, 미래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학생부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8.31.)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폐기
4.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따라서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장학제도의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151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1월 08일

발 의 자: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서상열,
아이수루, 이민옥, 이소라,
, 이효원, 장태용, 정준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출신 학생 및 대학 모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의 종류를 시장장학, 서울장학 I, 서울장학II 로 규정함 (안 제2조)
- 나. 서울장학I를 신설하여 대학교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서울장학II 는 기존 복지장학금과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하되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의 기준을 서울장학1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제3항)
- 다. 장학생의 선발방법 및 지급인원을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라. 장학금 수혜내용은 서울장학I은 학업장려금으로 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하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 는 기존 과 동일하게 등록금(수업료)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장학금·복지장학금”을 “시장장학·서울장학 I·서울장학Ⅱ”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장학금”을 “시장장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복지장학금”을 “서울장학Ⅱ”로, “곤란한 자로 하되,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를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로 한다.

② 서울장학 I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발방법”을 “선발방법 및 지급 인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Ⅱ은 등록금(수업료)으로 한다.

② 서울장학 I 은 학업장려금(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u>시장장학금·복지장학금</u>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지급대상) ① <u>시장장학금</u>의 지급대상은 <u>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② <u>복지장학금</u>의 지급대상은 <u>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u></p> | <p>제2조(장학금의 종류) ----- ----- ---- <u>시장장학·서울장학 I·서울장학II</u>-----.</p> <p>제3조(지급대상) ① <u>시장장학</u>--- ----- ----- ----- ----- ----- <u>한다. (단서조항 삭제)</u></p> <p>② <u>서울장학 I</u>의 지급대상은 <u>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u></p> <p>③ <u>서울장학II</u>----- -----</p>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지급대상)제2항 및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제2항을 개정,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서울장학 I 신설(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나. 전제

- 서울장학 I의 대상인원은 서울시립대 최근 3년간(21~23년) 신입생 중 소득 7구간 이하(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학생 평균 인원으로 전제
- 서울장학 I의 학업장려금은 서울시립대에서 기 운영 중인 저소득층 대상 수학보조금 지급 장학제도(형설장학 I)의 월별 지원금액(월30만원)과 동일하다고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립대 최근 3년간 소득 7구간 이하 신입생 평균인원 및 서울시립대 저소득층 대상 수학보조금 지급 장학제도(형설장학 I)의 지원금액을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510,000천원(연평균 102,000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5년) | 2차년도 (2026년) | 3차년도 (2027년) | 4차년도 (2028년) | 5차년도 (2029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서울장학 I 신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510,000 |
| | 소계(b)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510,000 |
| □ 총 비용(b-a) |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510,000 |

4. 덧붙이는 의견

- 서울장학 I의 대상 인원 및 지원금액의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지급대상)제2항 및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제2항을 개정,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510,000천원(연평균 102,000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1차년도 (2025년) | 2차년도 (2026년) | 3차년도 (2027년) | 4차년도 (2028년) | 5차년도 (2029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세입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세출 | 서울장학 I 신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510,000 |
| | 소계(b)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510,000 |
| □ 총 비용(b-a) | |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102,000 | 510,000 |

나. 서울장학 I 신설 = 지급인원 × 학업장려금 × 5년

$$= 340명 \times 300,000원 \times 5년 = 102,000천원$$

| 장학명 | 수혜자격 | 대상인원 (a) | 학업장려금 (b) | 소요예산 (a×b) |
|--------|---|--|---------------------|---------------|
| 서울장학 I | 대학 신입생 중 서울시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 (소득 7구간 이하) | 340명 내외 (전체 신입생의 19%, 서울지역 신입생의 약70% 수준) | 300,000원 (학업장려금) | 102,000천원 |

※ 대상인원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신입생 중 소득 7구간 이하(중위소득 150%이하)인 학생
 평균 인원

※ 소득 7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업장려금 : 서울시립대 저소득층 대상 수학보조 장학금제도인 1)형설장학 I 의 월장학금액 (월30만원)으로 계산

1) 형설장학(I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월별일정액(월30만원)